

국방부령

병 무 청 과 그 소 속 기 관 직 제 시 행 규 칙
일 부 개 정 령 안

기 관 명 (부 서 명)	국방부 (조직관리담당관)
연 월 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병무청에 대체복무요원 자원관리 및 소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(6급 1명, 7급 1명) 및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(6급 1명)을 각각 증원하고, 병무청 소속기관에 사회복지요원 합숙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지도 인력 3명(9급 3명), 병역면탈 범죄의 예방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장비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(7급 1명) 및 병역판정검사 특수의료장비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(7급 1명)을 각각 증원하며, 병무청 소속기관에 두는 한시정원 9명(8급 6명, 9급 3명)의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28일에서 2022년 2월 28일로 1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1. 2. 00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, 병무청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총액 인건비제로 증원한 인력 4명(8급 1명, 9급 3명)을 감축하고, 사회복지요원 연수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1명(5급 1명) 및 특별사법경찰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1명(7급 1명)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00.00~00.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5조제1항 단서 중 “9명”을 “6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“5명”을 “4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제2항에 따라”를 “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무연수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사회복지무요원의 연수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1명(5급 1명), 사회복지무요원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3명(9급3명), 제2항에 따라”로, “12명(7급 1명, 8급 11명)”을 “13명(7급 2명, 8급 11명)”으로 한다.

제48조제1항 중 “2021년 2월 28일”을 “2022년 2월 28일”로 한다.

별표 3 중 총계 “276”을 “279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272”를 “275”로 하며, 행정주사 “39”를 “40”으로 하고, 행정주사·의료기술주사·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“21”을 “22”로 하며, 행정주사보 “41”을 “42”로 한다.

별표 3의2 중 총계 “277”을 “280”으로 하고, 일반직 계 “273”을 “276”으로 하며, 행정주사 “39”를 “40”으로 하고, 행정주사·의료기술주사·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“21”을 “22”로 하며, 행정주사보 “41”을 “42”로 한다.

별표 3의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“33”을 각각 “36”으로 하고, 행정서기보 “2”를 “5”로 한다.

별표 6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“1,491”을 각각 “1,493”으로 하고, 행정주사보 262 다음에 “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”을 신설하며, 의료기술주사

보 “36”을 “37”로 한다.

별표 6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“1,496”을 각각 “1,497”로 하고, 행정주사보 269 다음에 “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”을 신설하며, 의료기술주사보 “36”을 “37”로 하고, 의료기술서기 “14”를 “13”으로 한다.

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국방부령 제1003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“9명(행정서기보 9명)”을 “6명(행정서기보 6명)”으로, “3명(행정서기 2명, 의료기술서기 1명)”을 “2명(행정서기 2명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8]

병무청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(제48조 관련)

1. 제48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(존속기한: 2022년 2월 28일)

총계	9
일반직 계	9
의료기술서기	6
의료기술서기보	3

2. 제48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(존속기한: 2022년 2월 25일)

총계	1
일반직 계	1
행정서기보	1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45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사회복지무연수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 3과 같다. 다만,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9조제2항 및 「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4와 같으며, 별표 3의4의 정원 중 9급 9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.		제45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6명 ----- -----.		
② · ③ (생략)	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		
④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(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별표 6과 같다. 다만,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9조제2항 및 「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		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	

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으며, 별표 6의2의 정원 중 8급 5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.

⑤ (생략)

⑥ 제2항에 따라 중앙신체검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병역판정검사업무를 담당하는 3명(5급 3명) 및 제4항에 따라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사회복지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41명(7급 26명, 8급 7명, 9급 8명),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2명(7급 1명, 8급 11명) 및 병역진로설계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1명(9급 1명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⑦ (생략)

제48조(한시정원) ① 병역판정검사 중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1년 2월 28일까지 별표 8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둔다.

② (생략)

----- 4명 -----
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⑥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연수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사회복지요원의 연수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1명(5급 1명), 사회복지요원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3명(9급3명), 제2항에 따라 -----

----- 13명 -----
(7급 2명, 8급 11명) -----

-----.

⑦ (현행과 같음)

제48조(한시정원) ① -----

----- 2022년 2월 28일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국방부령 제1003호 병무청과 그 소속
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
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
원의 존속기한) 종전의 국방부
령 제945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
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
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
감원된 정원 1명(행정서기 1명)
을 제외한 별표 3의2의 정원 1
명(행정서기보 1명), 별표 3의4
의 정원 9명(행정서기보 9명)
및 별표 6의2의 정원 3명(행정
서기 2명, 의료기술서기 1명)은
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
다.

국방부령 제1003호 병무청과 그 소속
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
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
원의 존속기한) -----

----- 6명(행정서기보 6명)
-----2명(행정
서기 2명)은-----

-.

신·구정원대비표

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3]

병무청 공무원 정원표(제44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계	<u>276</u>	<u>279</u>	+3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272</u>	<u>275</u>	+3
·	·	·	
·	·	·	
행정주사	<u>39</u>	<u>40</u>	+1
행정주사·의료기술주사			
·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	<u>21</u>	<u>22</u>	+1
주사			
·	·	·	
·	·	·	
행정주사보	<u>41</u>	<u>42</u>	+1
·	·	·	
·	·	·	

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3의2]

병무청 공무원 정원표(제44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계	<u>277</u>	<u>280</u>	+3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273</u>	<u>276</u>	+3
·	·	·	
·	·	·	
행정주사	<u>39</u>	<u>40</u>	+1
행정주사 · 의료기술주사			
·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	<u>21</u>	<u>22</u>	+1
·	·	·	
·	·	·	
행정주사보	<u>41</u>	<u>42</u>	+1
·	·	·	
·	·	·	

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3의3]

사회복무연수센터 공무원 정원표(제45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계	<u>33</u>	<u>36</u>	+3
일반직 계	<u>33</u>	<u>36</u>	+3
·	·	·	
·	·	·	
행정서기보	<u>2</u>	<u>5</u>	+3

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6]

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 공무원 정원표(제45조제4항 본문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계	<u>1,491</u>	<u>1,493</u>	+2
일반직 계	<u>1,491</u>	<u>1,493</u>	+2
·	·	·	
·	·	·	
행정주사보	262	·	
<u>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</u>	<u><신 설></u>	<u>1</u>	+1
·	·	·	
의료기술주사보	<u>36</u>	<u>37</u>	+1
·	·	·	
·	·	·	

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6의2]

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 공무원 정원표(제45조4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계	<u>1,496</u>	<u>1,497</u>	+1
일반직 계	<u>1,496</u>	<u>1,497</u>	+1
·	·	·	
·	·	·	
행정주사보	269	·	
<u>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</u>	<u><신 설></u>	<u>1</u>	+1
·	·	·	
의료기술주사보	<u>36</u>	<u>37</u>	+1
·	·	·	
·	·	·	
의료기술서기	<u>14</u>	<u>13</u>	-1
·	·	·	
·	·	·	